

감사위원회 규정 (주한화)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권 한)

-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해임을 승인한다.
- ④ 위원회는 상기 ①항 내지 ③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 성)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함)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상법 제 542 조 10 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독립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독립이사인 위원이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2 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 10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독립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 7 조 (종 류)

-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②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8 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 ③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9 조 (소집 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3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문서, 모사 전송기 (FAX),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상기 ①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10 조 (결의 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②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전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있으며, 이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해임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조 (부의 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관한 진술
- ②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대한 보고 의무
 - 2.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3. 이사에 대한 유지 청구

감사위원회 규정 (주한화)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5.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③ 감사에 관한 사항
 1. 업무, 재산 조사
 2. 자회사의 조사
 3. 이사의 보고 수령
 4. 이사와 회사간의 소대표
 5. 소액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제기 결정 여부
 6. 외부감사인 선정, 지정요청 승인, 해임요청
 7.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8.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9. 감사 계획 및 결과
 10.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11.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12.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13.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14. 공시사항의 누락 및 적절한 공시를 위해 공시내용 매분기 보고 및 연 1 회 공시대상 감사
 15. 기타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영 전반의 사항

제 12 조 (관계인의 출석 등)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13 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 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4 장 보 칙

제 14 조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규정 (주한화)

제 15 조 (감사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16 조 (간 사)

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 17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 (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 4 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 5 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6 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 7 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8 조 (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 4조 및 제 6조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